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••• 2021/1/24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·經營 戰略

2021년 회계결산과 외부감사 및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

- 1. 2021년분 회계결산과 외부감사요점
 - ① 회사는 재무제표 스스로 작성 :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미리 제출
 - ② 증선위에 사전제출기업: 상장회사,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대법인, 모든 금융회사
 - ③ 제출기한: 정기주총 최종일 3.30일(총 90일)의 6주 전인 2월 15일까지 제출의무임(정기주총일이 앞으로 당겨지면, 제출의무일도 그 날짜만큼 당겨짐
 - ④ 미제출·지연제출시: 사유서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 강제지정 제재함.
 - ⑤ 전기말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대상임.
 - ⑥ 중요 회계쟁점 확인, 회계기준 준수, 핵심감사사항 선정과 기재·감사보고서에 공시
 - ⑦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보수, 투입시간, 감사계약 내용과 실행내역 기재함.
- 2. 2022년분 외부회계감사계약 체결
 - ① 결산기말(12.31) 부터 45일내(2월 14일까지) 외감계약 체결(날짜)해야 함 + 2주내 공시
 - ② 상장회사 등 : 상장감사인 등록 회계법인(40개)과 계약(3년 단위)
 - ③ 비상장 대법인: 비등록 회계법인과 계약(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, 3년 단위)
 - ④ 일반기업 등: 모든 회계법인 및 개인 감사반 계약 가능(내부감사결정, 1년 단위)